

상담서비스 협약서

서울지방병무청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(이하 양 “기관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요원 상담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이 사회복지요원의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, 상호 협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 및 수련상담자에게 상담을 의뢰하고,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의뢰된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간 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담서비스) ① 서울지방병무청은 복무 지도 중 복무 외 사회생활의 부적응 문제, 개인적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을 발견한 경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에 상담을 의뢰한다.
②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의뢰된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 소속 상담 센터에 방문하도록 하거나 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요원의 소속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, 1인당 10회기까지는 무료로 한다.

제3조(복무관리자문협의회) ①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사회복지요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문을 위한 복무관리자문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.
② 복무관리자문협의회의 정기모임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각 기관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.

제4조(협약의 유지 및 변경) 본 협약의 시행기간은 1년으로 하되

협약 만료일까지 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협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. 협약기간 중 본 협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상호 구두 또는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다.

제5조(상호의무) ①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되,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제공이 어려운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양 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이나 업무수행이 완료된 후에도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사회복지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비밀유지하며 상호간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.

③ 기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한다.

2014년 8월 27일

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
총장 이혜성

이혜성

서울지방병무청
청장 이상진

이상진